

THE HONORS 회칙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 명칭	현행과 동일
제2조 목적	현행과 동일
제3조 사무소 1. 클럽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불로 391(천군동)에 둔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클럽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무소 1. 현행과 동일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위 장소 이외에도 클럽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칙의 성립 및 효력 이 회칙은 회사와 클럽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한다)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회원가입계약(이하 ‘입회계약’이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여, 입회계약 종료 시까지 회사와 회원간의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4조 회칙의 성립 및 효력 이 회칙은 약관과 더불어 회사와 클럽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한다)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회원가입 계약(이하 ‘입회계약’이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여, 입회계약 종료 시까지 회사와 회원 간의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평일회원 4. 기타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법인회원의 등록지정인, 개인회원의 가족회원을 포함한다) 3. 평일회원 4. 기타회원
제6조 총회원수	현행과 동일
제7조 회원의 종류별 정의	현행과 동일
제8조 회원자격 1. 회원은 30세 이상의 사람이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제8조 회원자격 1. 현행과 동일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세미만인 사람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2. 개인정회원의 가족회원은 20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세미만인 사람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3. 외국인, 외국법인도 내국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회원이 될 수 있다. 4. 파산자, 정신이상자, 전염성질환자, 기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회원자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없다.	2. 개인 정회원의 가족회원은 19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3항 동일 4. 파산자, 정신이상자, 전염성 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기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회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없다. 5. 입회기간의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갱신 후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이 경우 갱신 후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탈회신청 및 입회금 반환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민법 등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또는 클럽과 회원간 탈회 및 입회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입회	현행과 동일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 평일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만, 회원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 평일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만, 회원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3. 클럽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에 따른 입회금 반환 신청이 동시 또는 연차적으로 발생할 경우 클럽은 입회금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제한	현행과 동일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탈회 3. 제명 4.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때 5. 회원인 개인 또는 법인의 파산 6. 법인의 해산,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회원인 개인 또는 법인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6. 법인의 해산,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7. 회사와 회원 간의 합의에 의할 때 8. 클럽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 및 회원의 명예를 손상하여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때
제13조 탈회 정회원은 가입 후 회원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탈회 1. 현행과 동일 2. 입회약정서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입회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입회기간의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갱신 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탈회할 수 없다. 다만 민법 등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또는 클럽과 회원간 합의로 탈회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승계	현행과 동일
제15조 회원권의 양도양수	현행과 동일
제16조 회원의 권리	현행과 동일
제17조 회원의 의무	현행과 동일
제18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현행과 동일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동일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규정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클럽운영위원회 규정을 작성하고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규정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클럽운영위원회 규정을 작성하고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경기규칙	현행과 동일
제22조 임시규칙	현행과 동일
	제7장 이용요금[신설 2025.05.01] 제23조 이용요금의 규정 1. 회사의 영업적자가 2년이상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 물가상승율 변동, 최저임금 변동, 체세금의 변동, 금리변동, 환율변동, 국제사회의 정세변동 등의 사정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 이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이용요금 조정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용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적 이용권과 탈회 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칙개정 1. 이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자격, 회원의 클럽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건전한 관습과 상례에 따른다.	제24조 회칙개정 1. 이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현행과 동일
제24조 부칙 1. 이 회칙은 2004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운영위원회 업무는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2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골프장 회칙보다 골프장 이용약관이 최우선하여 효력이 있다.